

인천대학교 국내·외 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인천대학교 학칙 제52조의2 및 제67조제2항에 의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와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(이하 “협정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한 국내 및 국외 대학(이하 “타교” 이라 한다) 간의 복수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“복수학위”란 본교와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교류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 대학에서 각각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.

② “국내 복수학위생”이란 본교와 국내대학에서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말한다. 그 중 본교 학생은 “국내 본교 복수학위생”, 타교 학생은 “국내 타교 복수학위생”이라 한다.

③ “국외 복수학위생”이란 본교와 국외대학에서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말한다. 그 중 본교 학생은 “국외 본교 복수학위생”, 타교 학생은 “국외 타교 복수학위생”이라 한다.

④ “소속대학”이란 복수학위생이 최초 입학 또는 편입한 대학을 말한다.

⑤ “교류대학”이란 협정을 체결한 양 대학 중 소속대학 이외의 대학을 말한다.

제2장 국내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운영

제3조(운영분야) ① 운영학과(부), 전공은 대학의 교수 확보율, 시설·설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운영학과(부), 전공은 복수학위과정 개설 학과만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예외적으로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중 학과(부), 전공 간 “연계·융합전공” 운영도 할 수 있다.

제4조(교육과정) 국내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(이하 “국내 복수학위과정” 이라 한다)은 각 대학에서 기운영 중인 교육과정에 한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수학기간) ① 수학기간은 소속대학 4년, 교류대학 1년으로 하되, 최초 1년과 최종학기는 소속대학에서 수학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불구하고,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국내 본교 복수학위생은 타교에서 수학하는 기간 동안 본교 재학생으로서의 학적을 보유하여야 한다.

제6조(신청자격) 본교 학생으로서 국내 복수학위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본교에서 계절학기를 제외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

2. 학칙에 의한 징계 사실이 없는 자. 단, 학사경고 징계자는 직전학기에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

3. 양 대학의 협정에 위배되지 아니한 자

제7조(신청방법 및 시기) 국내 복수학위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본교 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류신청학기 개시 3개월 전까지 본교 학과(부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추천 및 선발) ① 학과(부)장은 제7조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학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은 총장에게 대상자를 추천한다.

② 총장은 추천서류를 검토하여 국내 본교 복수학위생을 확정 한 후 타교에 알린다.

③ 국내 타교 복수학위생으로 선발된 자의 명단은 교류신청학기 개시 2개월 전까지 타교에서 본교에 알려야 한다.

④ 국내 타교 복수학위생은 타교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중에서 선발한다. 다만, 본교 학과(부) 입학정원의 20%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.

제9조(등록) ① 국내 복수학위생은 양 대학의 등록절차에 따라 매 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등록금은 협정에 의한다.

② 국내 복수학위생 중 소속대학에서 학기를 이수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류대학에서 학점교류로 학점이수가 가능하다. 이 경우, 교류대학에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.

제10조(학사관리 등) 국내 복수학위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류대학의 학칙과 규정에 따르고, 학사지도에 관한 제반사항은 학과(부), 전공에서 담당한다.

제11조(성적평가 및 학점인정) ① 국내 본교 복수학위생이 타교에서 복수학위 취득을 위해 이수한 학점은 타교 이수과목으로 구분하여 인정한다.

② 국내 타교 복수학위생이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2조(학위취득) 국내 복수학위생은 양 대학의 학위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.

제13조(국내 본교 복수학위생의 중도포기) ① 국내 복수학위과정을 중도 포기할 경우 포기원을 본교 소속학과(부)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미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「인천대학교 국내대학과의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한다.

② 포기 신청기간은 양 대학의 협정에 따른다.

제3장 국외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운영

제14조(운영분야) ① 운영학과(부), 전공은 대학의 교수확보율, 시설·설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운영학과(부), 전공은 복수학위과정 개설 학과만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다만, 예외적으로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중 학과(부), 전공 간 “연계·융합전공” 운영도 할 수 있다.

제15조(교육과정) 국외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(이하 “국외 복수학위과정”이라 한다)은 각 대학에서 기운영 중인 교육과정에 한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6조(수학기간) ① 국외 복수학위생의 수학기간은 계절학기를 제외하고 본교 4학기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21.5.26.>

② 제1항에 불구하고, 협정에 명시되었거나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국외 본교 복수학위생은 타교에서 수학하는 기간 동안 본교 재학생으로서의 학적을 보유하여야 한다.

제17조(신청자격) 본교 학생으로서 국외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본교에서 1개 학기(계절학기 제외) 이상 이수한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
2. 학칙에 의한 징계 사실이 없는 자, 단, 학사경고 징계자는 직전학기에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
3.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4. 양 대학의 협정에 위배되지 아니한 자

제18조(국외 본교 복수학위생의 제출서류) 국외 복수학위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청서 1부
2. 단과대학장(학과장 경유) 추천서 1부
3. 자기소개서 1부
4. 영문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
5. 어학성적 증명서(필요한 경우) 1부
6. 수학계획서 1부

제19조(신청 및 선발) ① 국외 복수학위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본교 학생은 제18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학과(부)장 및 학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국외 본교 복수학위생은 신청자의 자격요건, 수학능력 등에 관한 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타교와 협의하여 총장이 최종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해당 부서는 최종 선발된 명단을 학과(부), 전공과 교무처로 알리고, 타교 수학을 위한 제반 절차 진행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④ 국외 타교 복수학위생은 타교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중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며,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.

⑤ 선발인원은 양 대학의 협정에 의한다.

제20조(등록 및 학적처리) ① 국외 본교 복수학위생은 양 대학의 등록절차에 따라 매학기 양 대학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등록금 납부는 필요시 양 대학 간

협정으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5.26.>

- ② 국외 본교 복수학위생의 타교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- ③ 국외 타교 복수학위생은 본교의 등록절차에 따라 매 학기 등록을 하여야 하며, 등록에 관한 사항은 양 대학 간 협정에 의한다.
- ④ 국외 본교 복수학위생의 타교 수학기간은 본교 재학기간으로 한다.

제21조(학사관리 등) 국외 복수학위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류대학의 학칙과 규정에 따르고, 학사지도에 관한 제반사항은 학과(부), 전공에서 담당한다.

제22조(성적평가 및 학점인정) ① 국외 본교 복수학위생이 타교에서 복수학위 취득을 위해 이수한 학점은 타교 이수과목으로 구분하여 인정한다.

- ② 국외 타교 복수학위생이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.

제23조(학위취득) 국외 복수학위생은 양 대학의 학위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.

제24조(국외 본교 복수학위생의 중도포기) ① 국외 복수학위과정을 중도 포기할 경우 포기원을 본교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미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「인천대학교 외국대학 교환학생교류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한다.

- ② 포기 신청기간은 양 대학의 협정에 따른다.

제4장 보칙

제25조(보칙) 국내 및 국외 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타교와 상호 협의한 내용에 따른다.

부칙 <제875호, 2018.8.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「인천대학교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 규정」을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「인천대학교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 규정」에 따라 수학하고 있는 학생은 이 규정에 따라 수학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972호, 2021.5.26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